

시 민

문서번호	도시철도과-9984	주무관	도시철도재정팀장	도시철도과장	교통기획관	도시교통실장
결재일자	2019.9.9.	박병규	안신훈	박진순	임동국	09/09 代임동국
공개여부	대시민공개					
방침번호		협 조				

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 
**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**

2019. 9.

**도시교통실**  
(도시철도과)

## 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‘■’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정책의 제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현황자료(통계자료 등) 및 실태조사서 검토</li> <li>-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</li> </ul> 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시민참여) 청책토론회, 시민공모, 설문조사 등</li> <li>- (전문가 자문) 자문위원회, TF운영, 타당성 검토조사 등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수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(근거법령 및 규칙, 지침 등)는 검토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선거법)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</li> <li>- (성별분리통계)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</li> </ul> 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정책(사업) 집행의 직·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갈등)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</li> <li>- (사회적 약자)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</li> <li>- (일자리) 일자리 창출, 직·간접 채용, 전문인력 양성, 창업지원</li> <li>- (안전)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, 안전 관리 등</li> <li>- (온실가스 감축)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,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</li> </ul> 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정책집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타기관,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·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타기관) 타기관(중앙정부, 지자체), 민간(단체) 등의 자원 활용 방안</li> <li>- (자치구 영향) 자치구 행정·인사·재정 부담 및 적정성, 파급효과 분석 등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정책·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지속가능성) 지역경제 발전, 사회적 형평성, 환경보전 등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정책홍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국내외 정책(사업)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홍보) 국내보도자료, 기자설명회, 현장설명회</li> <li>- (정책영문화) 영문제목·요약, 해외언론보도,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</li> </ul> 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기타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불필요한 외국어·외래어 표현 대신 <b>바른 우리말</b>을 사용하였습니까?</li> </ul>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공개 여부를 “비공개”로 설정했다면 <b>법적근거</b>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? 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~제8호)</li> </ul>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
# 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

「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」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

## 1 공채 이자율 인하(안)

### □ 개정 배경

- **행안부, 도시철도공채 이자율 인하 요청**(19.8.19.): 세계 경제 리스크로 인한 채권시장 변동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필요
  -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**전국 지자체 공채 이자율 인하 합의**(8.19. 행안부 회의)
- 現 공채 이자율(1.25%) 유지시, 공채 신고시장가격\*이 액면가보다 높아져 은행의 채권매입 중단으로 인한 **시민 불편 발생 우려**

\* 한국거래소 소액채권 전담 23개 증권사가 제출한 익일 의무매수 희망가격의 평균가격으로, 공채 즉시매도시 매입자는 액면가와 신고시장가격의 차액을 부담

- 은행 채권매입 중단시, 매입자는 즉시매도\*를 선택하지 못하고 공채를 7년간 보유\*\*해야 하므로 금전적, 시간적 손해 발생

\* 즉시매도 : 공채의 신고 시장가격과 액면가의 차액만을 부담

\*\* 고객보유 : 공채 매입금액 전액 부담하여 7년 후 원리금 상환

### □ 개정 내용

- (이자율 인하) 공채 **이자율 현행 1.25%에서 1.0%\*로 인하**(시행규칙 제15조 개정)
  - \* 최근 국민주택 채권의 표면금리 1.0%를 참고하여 인하 (행안부 권고사항)
- (기대효과) 은행의 공채매입 중단 예방을 통한 **시민 불편 방지**와 이자율 인하를 통한 **市 재정부담 경감**
  - 금리 인하시 '18년 발행 공채 기준 약 140억 가량 상환 이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되어 향후 市 상환 공채 이자 7년간 900억 이상 감축 전망

**【도시철도공채 금리 인하시 원리금 변동내역('18년 발행 도시철도공채 기준, 억원)】**

구 분	1.25%(현재)	1.0%(개정시)
'25년 상환 원리금 (18년 발행)	8,433	8,294
원 금	7,743	7,743
이 자(추정치)	690	551

※ 5년 복리, 2년 단리 기준으로 은행 예금 계산법에 연이율 적용하여 추산

**추진 경과**

- 입법계획 수립 : '19.8.26.(월)
- 입법예고 : '19.8.29.(목) ~ '19.9.3.(화) ※ 별도 의견 없음

**향후 일정**

- 조례 규칙심의회 : '19.9.20.(금)
  - 규칙안 공포(시행) : '19.10.1.(화)
- ※ 행안부 요청에 의거, 금리 변경절차 원활히 시행코자 조기 공포

**2 공채 상환절차 개선(안)**

**개정 배경**

- 공채 상환개시 20일 전 공고 및 상환일 이전 공채 소유자에 대한 개별 안내(우편 등)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조례\* 개정됨(6.28.)
  - \* 김희걸 의원(민주당, 양천4) 발의로 '제4조의2 ① 20일 전 공고, ② 개별안내' 신설
- 조례 개정안의 '시민 재산권 보호' 취지를 반영하는 동시에,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의 상환안내 및 절차규정 개선 추진

**【현행 안내방법】**

- ❖ (상환공고)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(年 1회, 1월)
- ❖ (개별안내) 조례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매월 상환일 도래 공채 보유자에게 우편 이용 안내 실시('19.6~)

## 개정 내용

- 시행규칙 제18조 중 상환개시 10일 전 공고를 규정한 부분을 삭제하고, **개별안내 어려울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안내 가능하도록 단서 추가**

※ 참조법령 : (행정절차법)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보, 인터넷 등에 공고 가능  
(정보통신망법 시행령) 통지가 어려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로 통지 같음

### 【개정안 내용】

- ❖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市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안내 가능
  1. 공채매입신청서에 성명,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허위 기재하거나 누락한 경우
  2. 안내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
  3. 기타 안내가 불가능한 경우

- 현행 시행규칙 제16조를 **‘원리금 상환절차’ 조항으로 개정**, 공채 매입자의 **은행 직접방문 外 증권·은행계좌로 자동상환되는 방법을 추가**

- 공채 매입 시 매입자가 상환방법을 자율 선택\*할 수 있도록 공채 매입신청서 등 관련 서식(시행규칙 별표1, 2) 개정 병행

\* 미 선택 시 창구 방문하여 원리금 상환 가능

## 추진 경과

- 입법계획 수립 : '19.7.10.(수)
- 입법예고 : '19.7.25.(목) ~ '19.8.14.(수) ※ 별도 의견 없음

## 향후 일정

- 조례규칙심의회 : '19.9.20.(금)
- 규칙안 공포(시행) : '19.10.10.(목)

### □ 개정 배경

- 「주식·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시행(9.16.)에 따라 전국 지자체 공채 관련 자치법규 용어 일괄정비 필요(행정안전부 요청, 8.27.)
-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조항이 부적합하여 현행화 필요(법무담당관-12424호, 7.29.)

### □ 개정 내용

- 시행규칙 상 ‘「공사채 등록법」에 따른’을 ‘「주식·사채 등에 대한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’으로, ‘등록기관’, ‘등록방법’, ‘등록사무’, ‘등록발행’을 각각 ‘전자등록기관’, ‘전자등록방법’, ‘전자등록사무’, ‘전자등록발행’으로 수정
-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‘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’을 ‘「도시철도법 시행령」 제14조 및 조례 제3조’로 수정

### □ 향후 일정

- 조례규칙심의회 : '19.9.20.(금)
- 규칙안 공포(시행) : '19.10.10.(목)

- 붙임 1.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1부.  
 2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.  
 3. 전국 지자체 금리 인하 일정 1부.  
 4. 전자증권 관련 자치법규 정비 필요성 1부. 끝.